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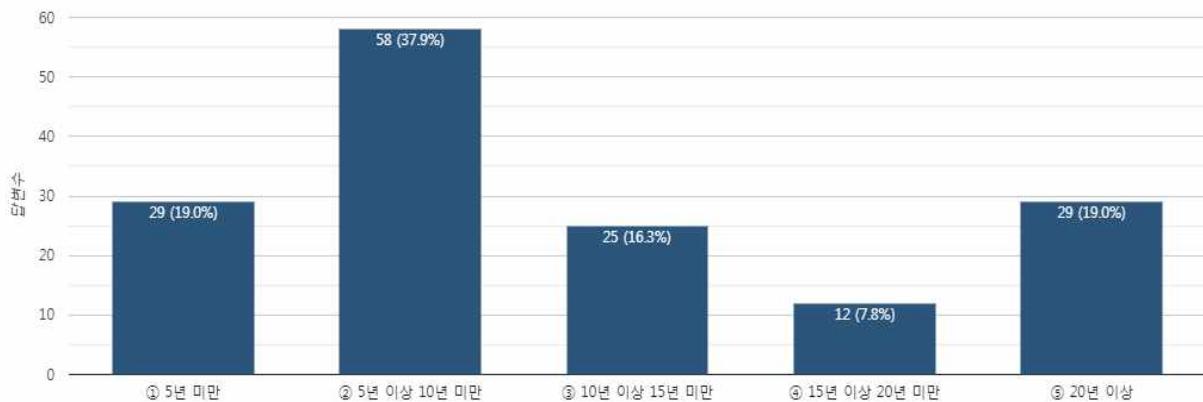
## 항소심 제도개선 설문조사(대한변호사협회) 문항 및 결과

설문대상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변호사) <sup>1)</sup> 27347명
응답자 수	153명(0.55%)

### ■ 설문조사 대상자 정보

1. 귀하가 법조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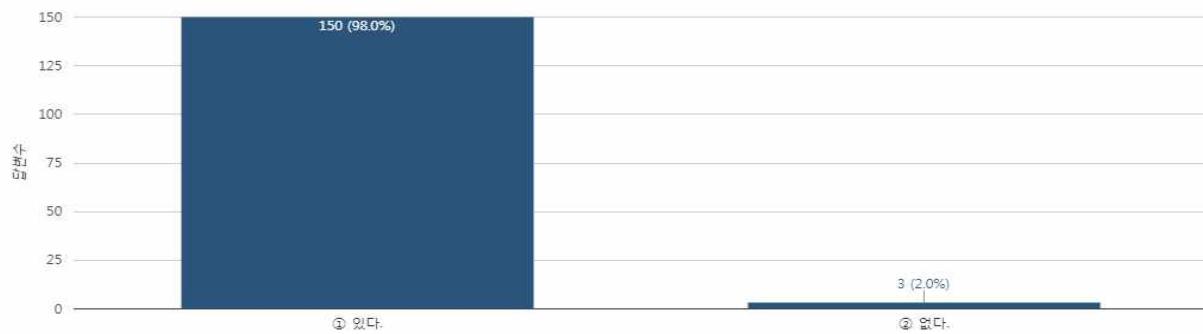
- ① 5년 미만 (29, 19.0%)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58, 37.9%)
-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25, 16.3%)
-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12, 7.8%)
- ⑤ 20년 이상 (29, 19.0%)



2. 귀하는 법조인으로 근무하면서 민사항소사건에 관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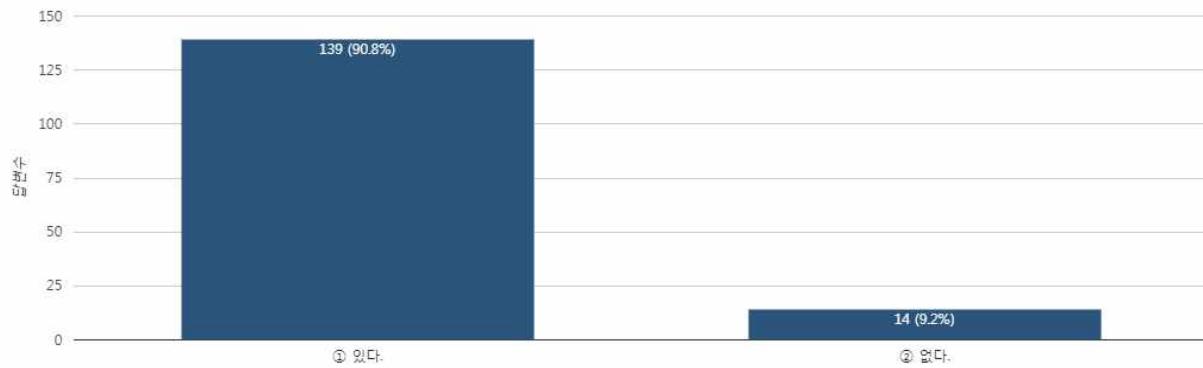
- ① 있다. (150, 98.0%)
- ② 없다. (3, 2.0%)

1) 개업 또는 휴업 상태의 변호사를 대상으로만 실시, 미개업 상태의 변호사는 제외(미개업 상태의 변호사는 보통 수습변호사이거나 개업이력 없이 기관·단체에 취업한 경우이고, 이 경우는 유의미한 소송수행경험이 없을 것임)



3. 귀하는 법조인으로 근무하면서 형사항소사건에 관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139, 90.8%)
- ② 없다. (14,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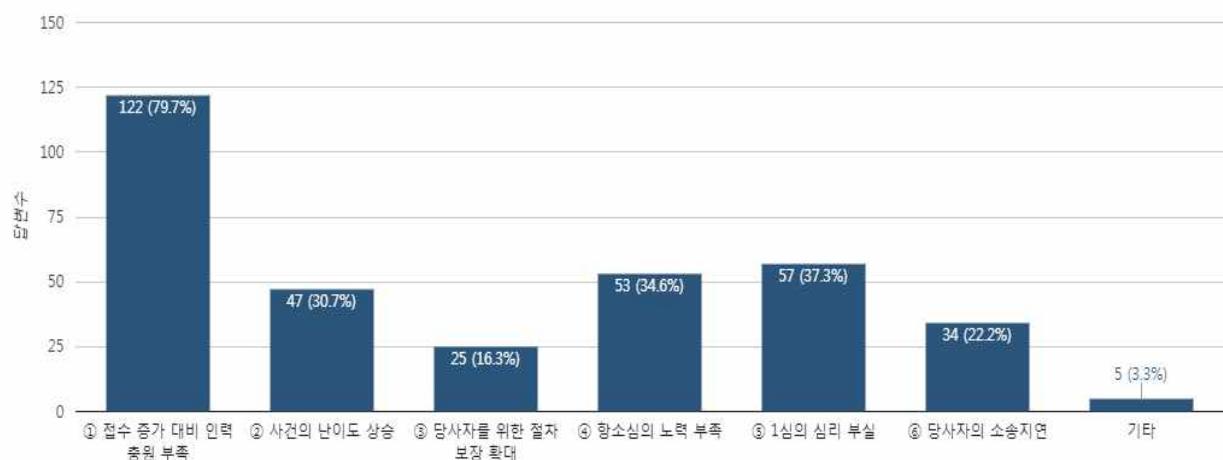


## ■ 민사 항소심 제도개선에 관한 문항

최근 10년간 민사항소사건에서는 항소인용률, 상고율, 상고심에서의 폐기율에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사건처리기간 및 항소심에서의 심리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1, 2, 3심을 통틀어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급별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인바, 그 일환으로 민사항소심에서의 제도개선 가능성에 관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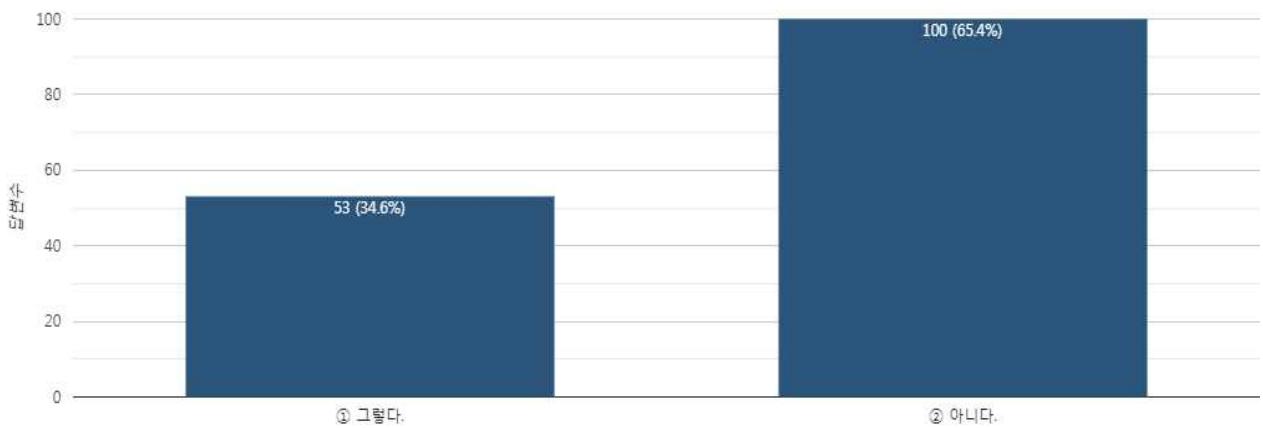
4. 민사항소심의 처리기간 증가 원인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복수 선택 가능).

- ① 접수 증가 대비 인력충원 부족 (122, 79.7%)
- ② 사건의 난이도 상승 (47, 30.7%)
- ③ 당사자를 위한 절차보장 확대 (25, 16.3%)
- ④ 항소심의 노력 부족 (53, 34.6%)
- ⑤ 1심의 심리 부실 (57, 37.3%)
- ⑥ 당사자의 소송지연 (34,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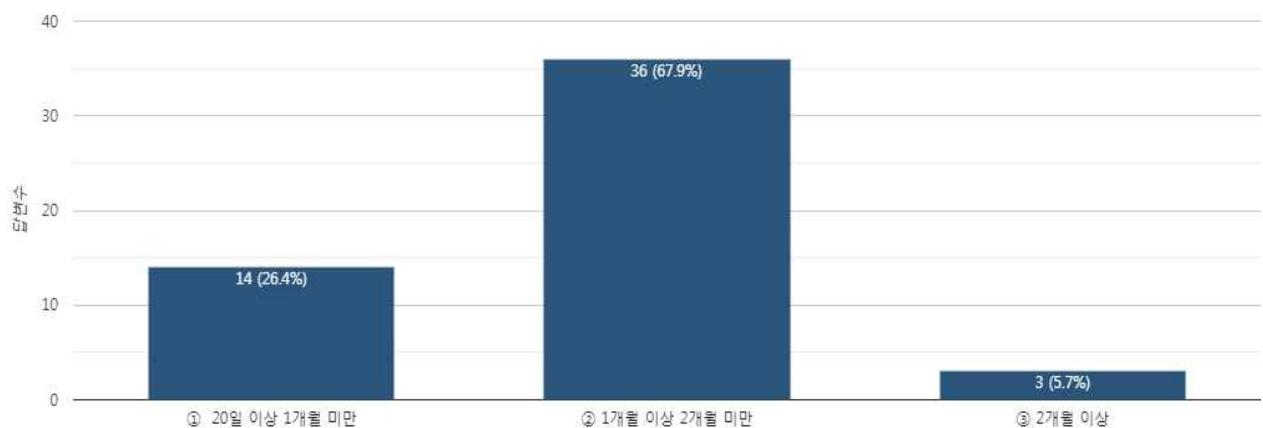
5. 현재 항소기록 접수 직후 기한을 정하여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하고 있으나, 항소인이 기한 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항소이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령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53, 34.6%)
- ② 아니다. (100, 65.4%)



5-1. 5번 질문에 ①로 답변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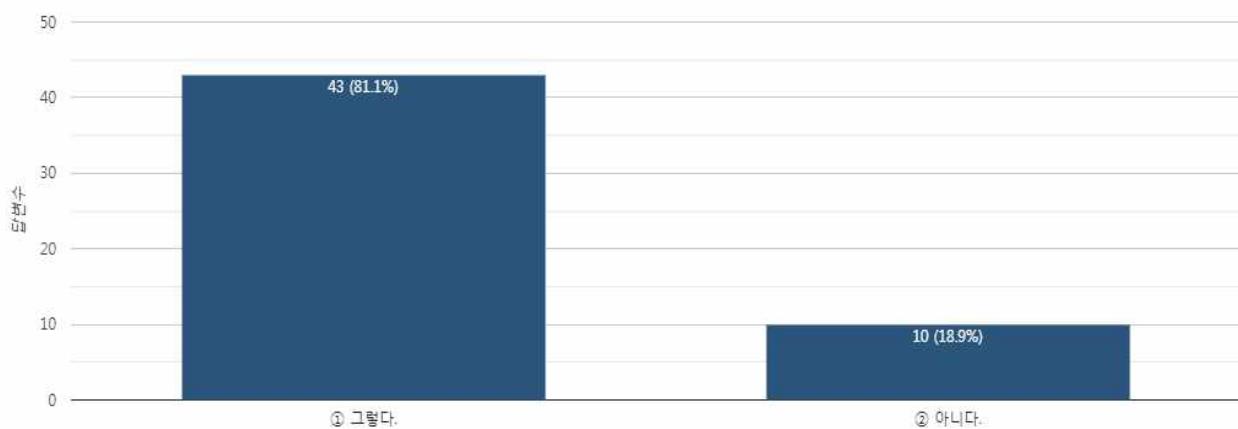
- ① 20일 이상 1개월 미만 (14, 26.4%)
- ②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36, 67.9%)
- ③ 2개월 이상 (3, 5.7%)



5-2. 5번 질문에 ①로 답변한 경우, 재판부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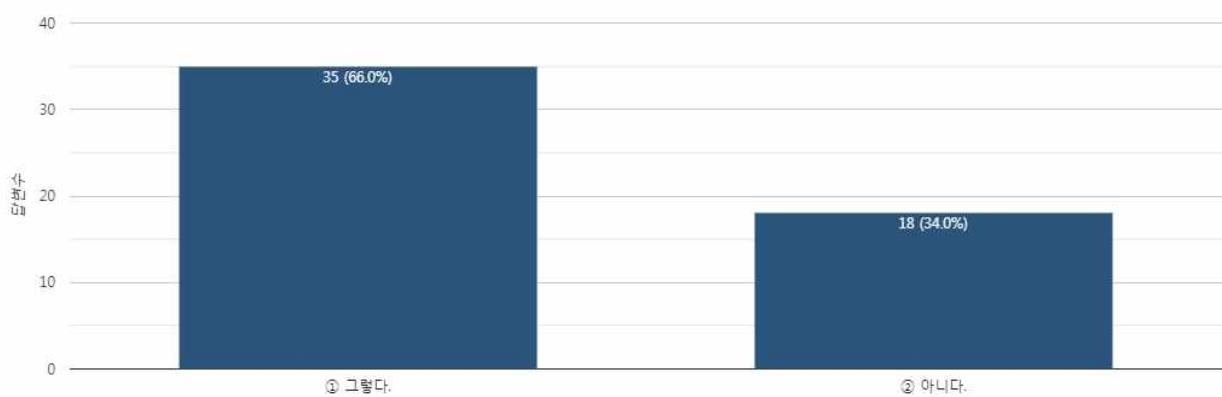
십니까.

- ① 그렇다. (43, 81.1%)
- ② 아니다. (10, 18.9%)



5-3. 5번 질문에 ①로 답변한 경우, 무변론판결, 자백간주판결, 공시송달판결, 소액판결에 대하여도 항소이유서 제출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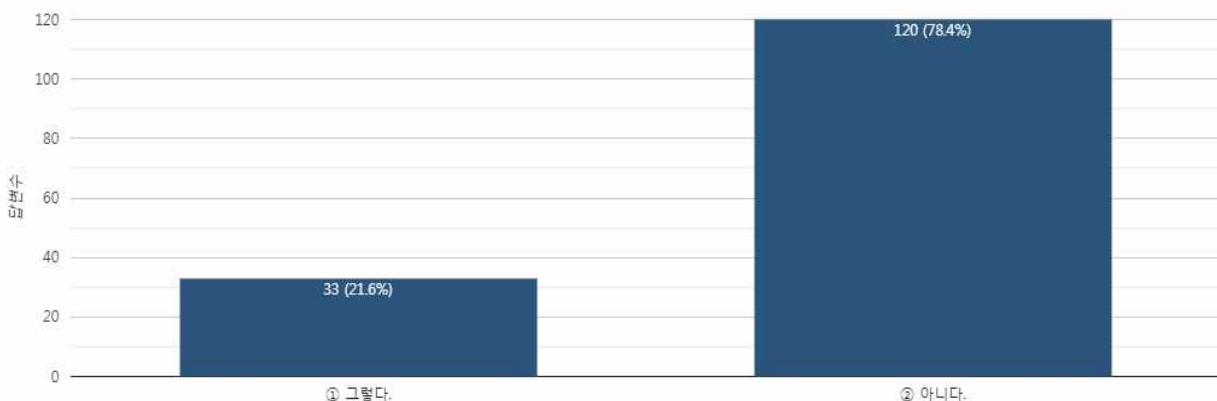
- ① 그렇다. (35, 66.0%)
- ② 아니다. (18, 34.0%)



6. 현행 민사소송법은 적시제출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출기한의 제한(제147조),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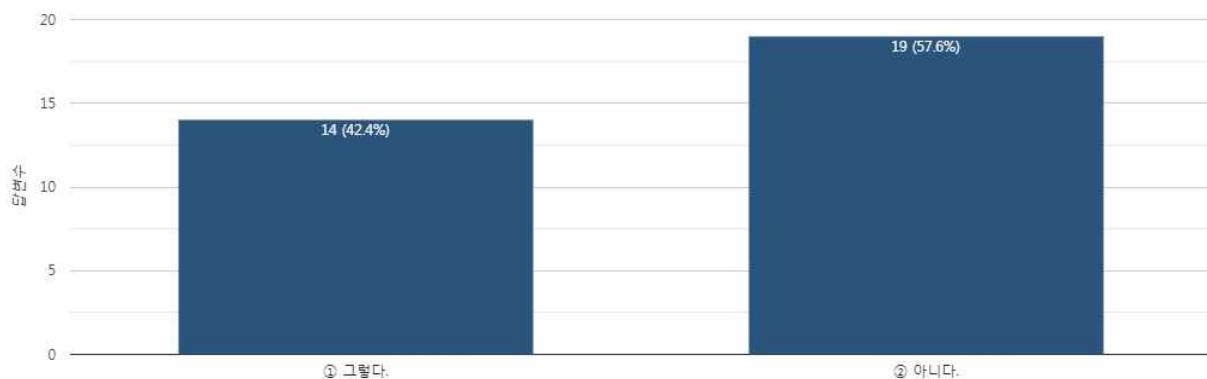
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제149조),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제285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은 항소심에도 적용되고 있으나 항소심 특유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항소이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항소인이 항소이유서에 내세우지 않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일정한 요건 하에 실권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33, 21.6%)
- ② 아니다. (120, 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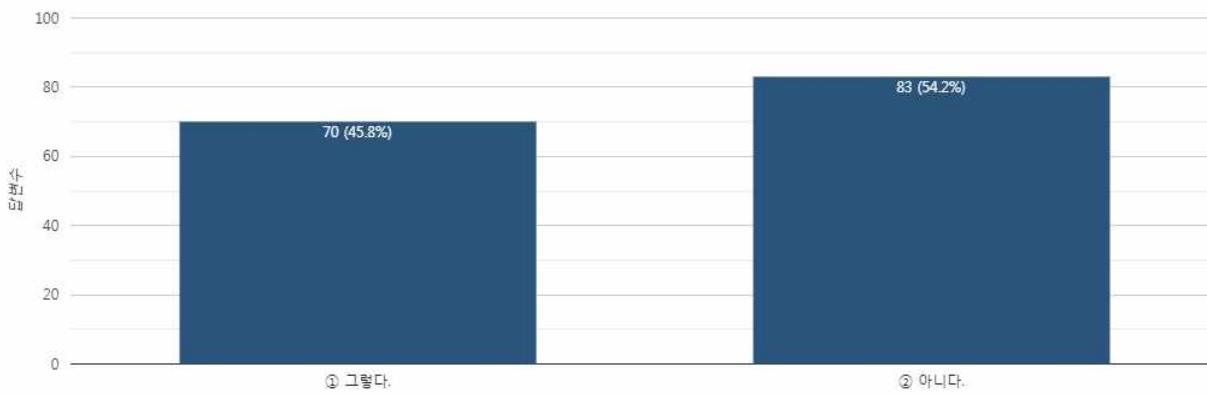
6-1. 6번 질문에 ①로 답변한 경우, 무변론판결, 자백간주판결, 공시송달판결, 소액판결에 대하여도 항소이유서에 내세우지 않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실권효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14, 42.4%)
- ② 아니다. (19, 57.6%)



7. 항소이유서에 내세우지 않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실권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항소이유서에 내세우지 않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현행법상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민사소송법 제149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부가 민사소송법 제149조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주의적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70, 45.8%)
- ② 아니다. (83, 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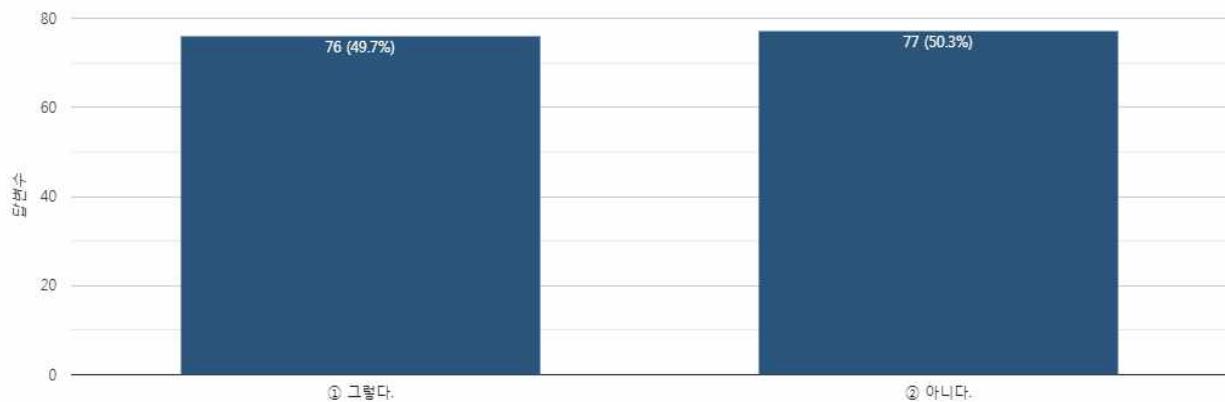


8.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제도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소이유서를 재판부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을 지연시킨 경우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1회 변론기일에 변

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적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76, 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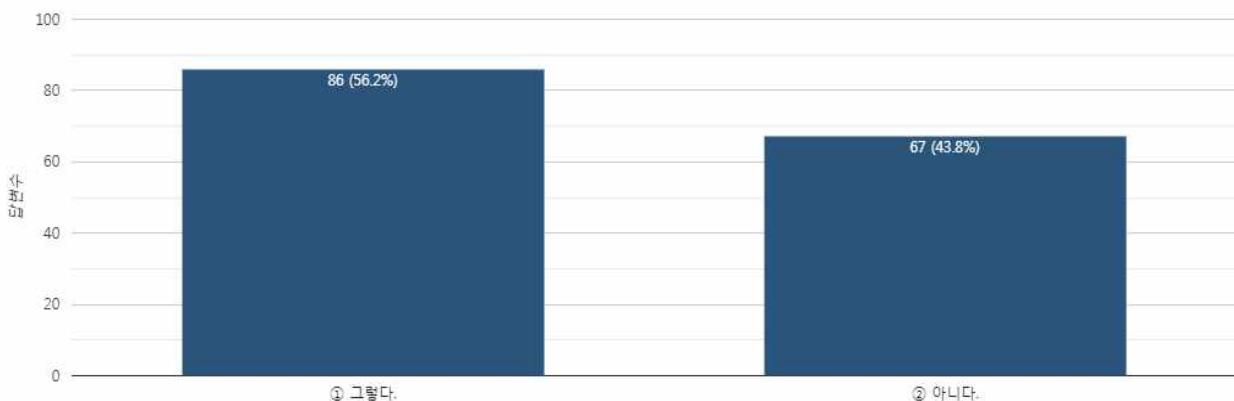
② 아니다. (77, 50.3%)



9. 당사자의 항소이유서 작성 편의와 효율적인 심리를 도모하기 위해, 항소이유와 심리방식이 정형화된 사건 위주로 항소이유서 양식을 개발하여 법원에 배치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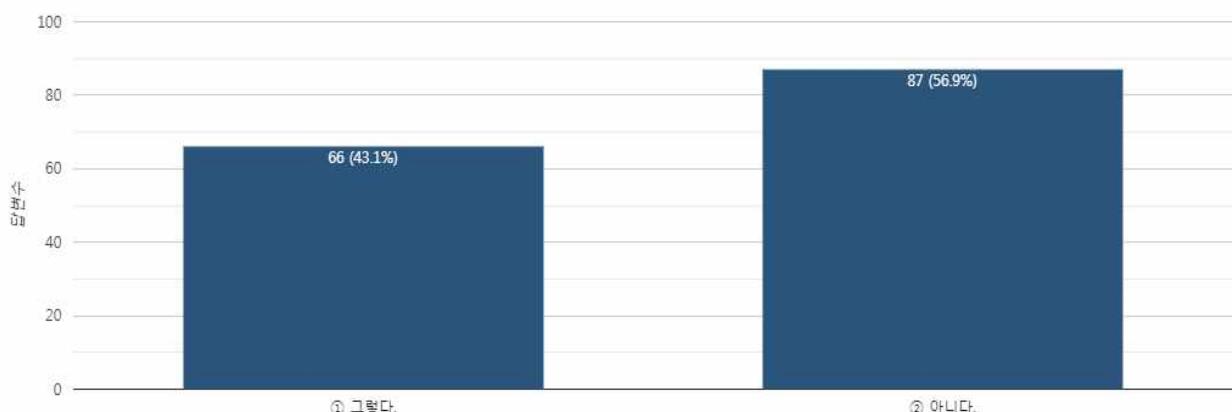
① 그렇다. (86, 56.2%)

② 아니다. (67,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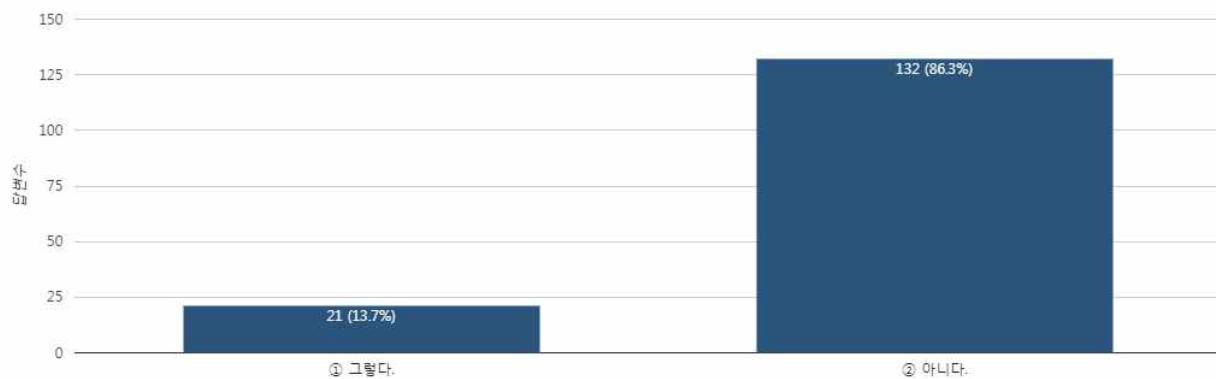
10. 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의무나 항소이유서에 내세우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실권효를 부과한다면,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항소인에게도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의무나 답변서에 내세우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실권효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66, 43.1%)
- ② 아니다. (87, 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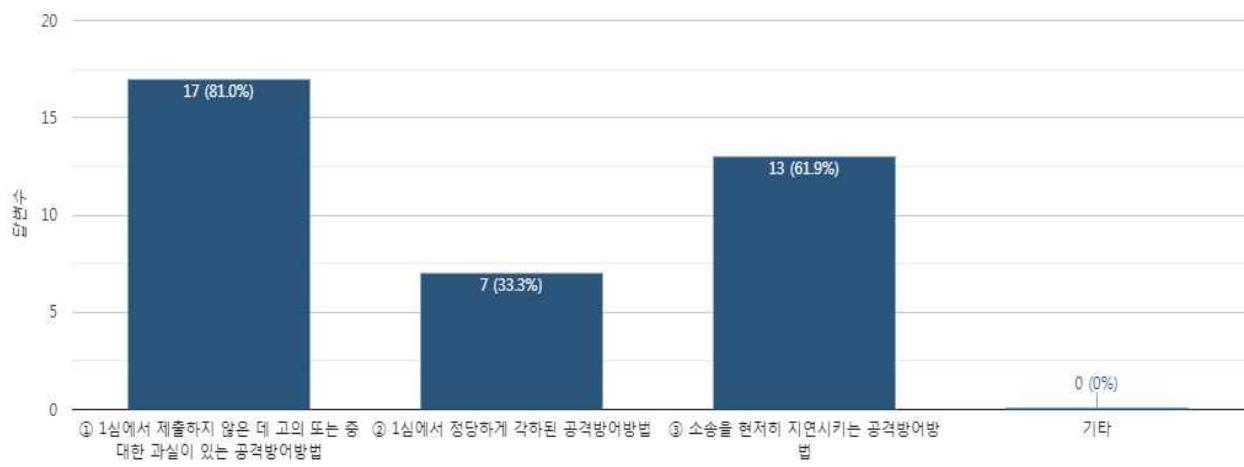
11. 변론의 1심 집중과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항소인이 1심에서 변론을 거쳤음에도 내세우지 않았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실권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21, 13.7%)
- ② 아니다. (132, 86.3%)



11-1. 11번 질문에 ①로 답변한 경우, 1심에서 변론을 거쳤음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실권효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공격방어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복수 선택 가능).

- ①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격방어방법 (17, 81.0%)
- ② 1심에서 정당하게 각하된 공격방어방법 (7, 33.3%)
- ③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공격방어방법 (13, 61.9%)
- ④ 기타 (답변 없음)



12. 1심에서 변론을 거쳤음을 이유로 하여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실권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1심에서 내세우지 않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현행법상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민사소송법 제149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부가 민사소송법 제149조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주의적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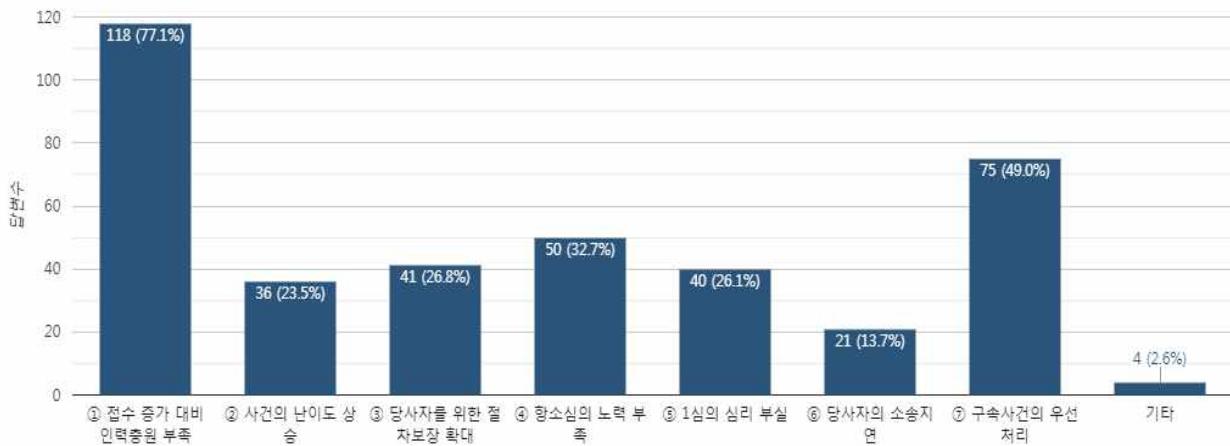
- ① 그렇다. (55, 35.9%)
- ② 아니다. (98, 64.1%)

### ■ 형사 항소심 제도개선에 관한 문항

최근 10년간 형사항소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의 파기율이 상당히 감소하였고 상고심에서의 파기율에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항소율, 상고율, 불구속사건의 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1, 2, 3심을 통틀어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급별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인바, 그 일환으로 형사항소심에서의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개선 가능성에 관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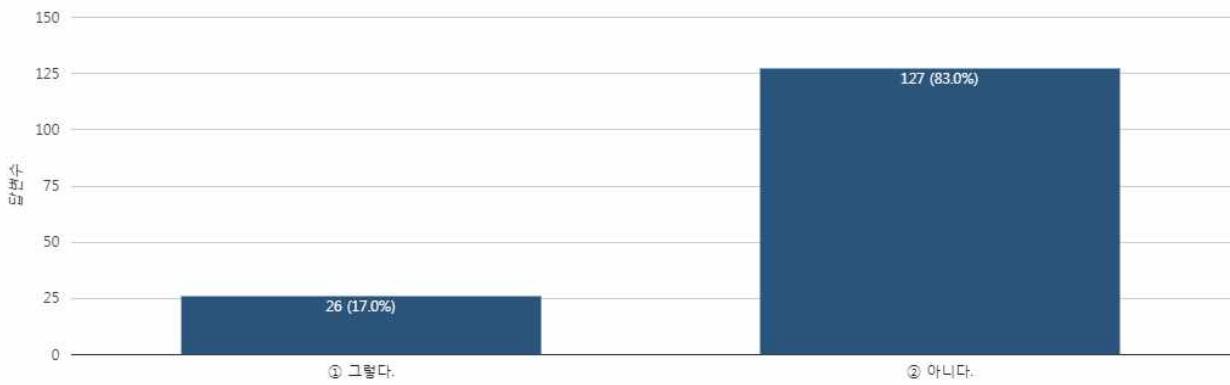
14. 형사항소심에서 불구속사건의 처리기간 증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선택 가능).

- ① 접수 증가 대비 인력충원 부족 (118, 77.1%)
- ② 사건의 난이도 상승 (36, 23.5%)
- ③ 당사자를 위한 절차보장 확대 (41, 26.8%)
- ④ 항소심의 노력 부족 (50, 32.7%)
- ⑤ 1심의 심리 부실 (40, 26.1%)
- ⑥ 당사자의 소송지연 (21, 13.7%)
- ⑦ 구속사건의 우선 처리 (75, 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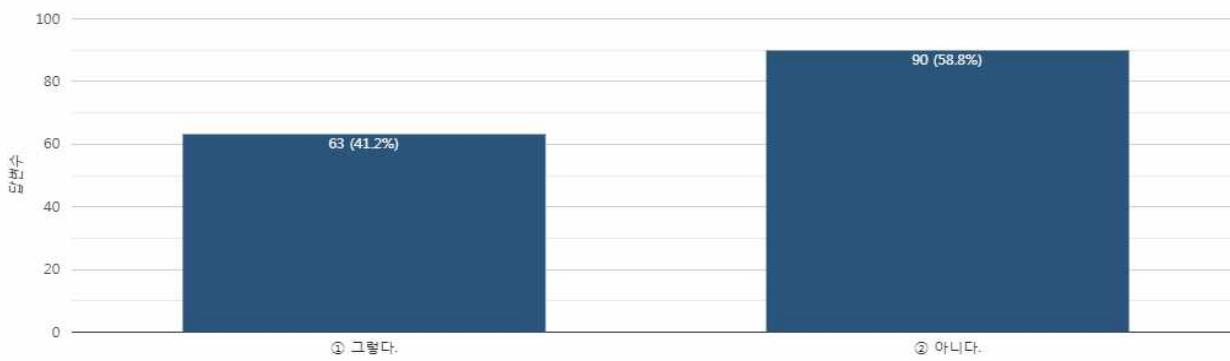
15. 현행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2항은 항소심 법원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1)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사유 중 1), 3)은 증인신문 외의 증거조사에도 적용시키는 등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제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26, 17.0%)
- ② 아니다. (127, 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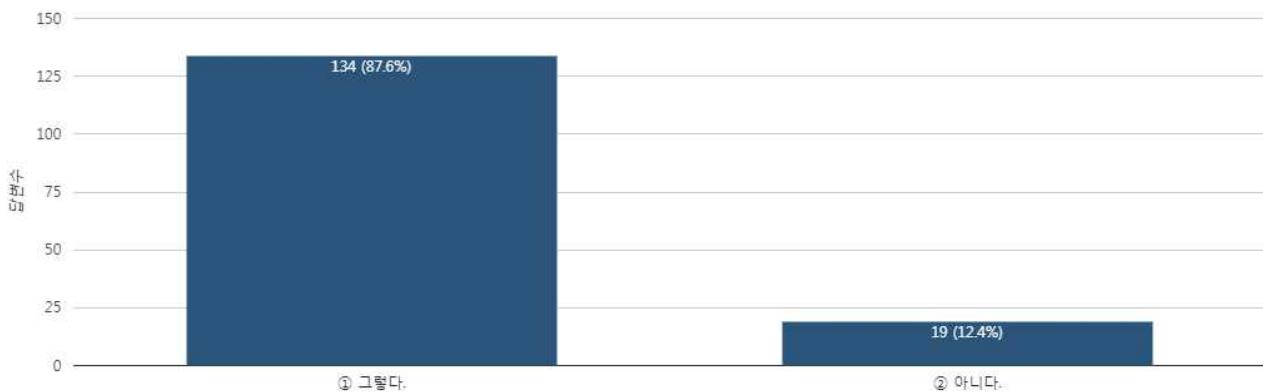
16.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외의 부분도 인용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369조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63, 41.2%)
- ② 아니다. (90, 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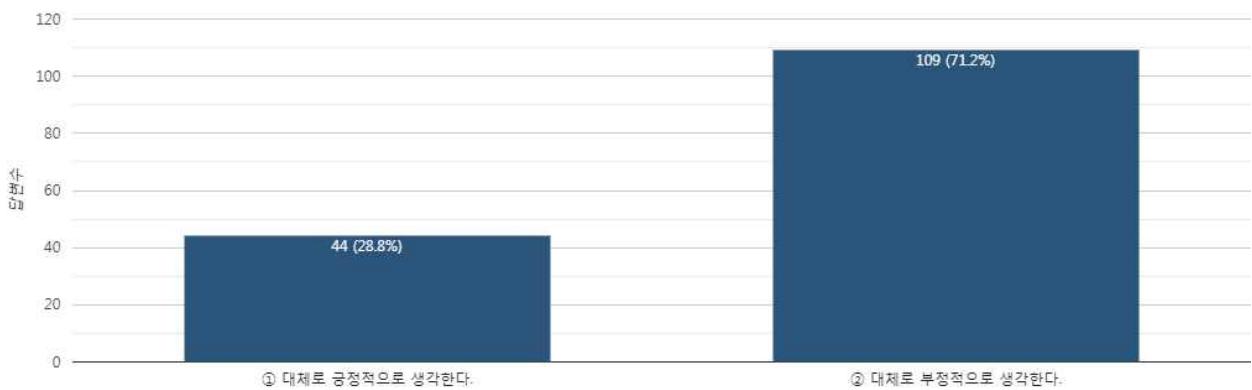
17.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조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판부가 의미 있는 항소이유에 심리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항소심에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여 변호인에게만 변론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134, 87.6%)
- ② 아니다. (19,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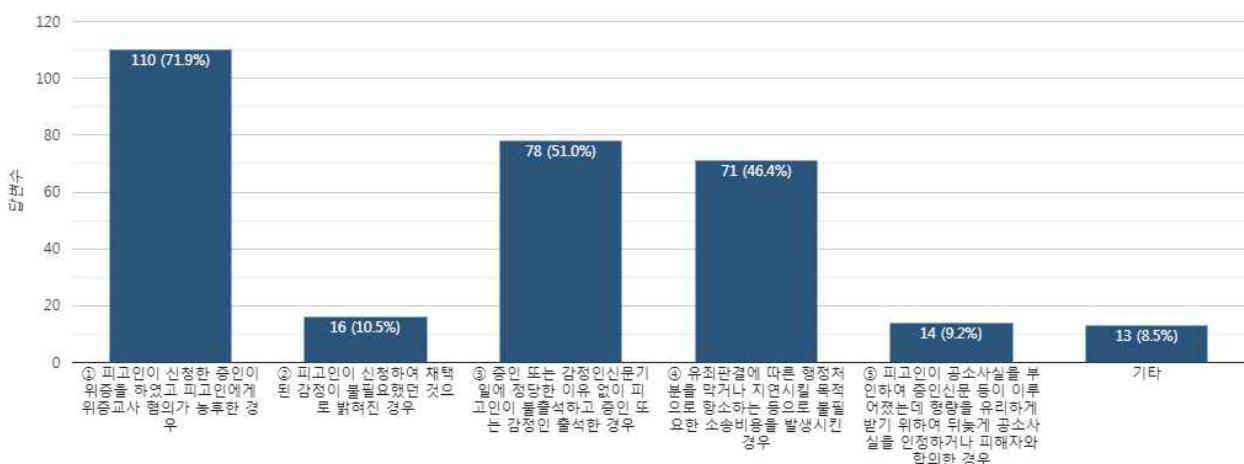
18. 형사소송법 제190조 제1항은 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검사 아닌 자’에는 피고인이 포함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44, 28.8%)
- ②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109, 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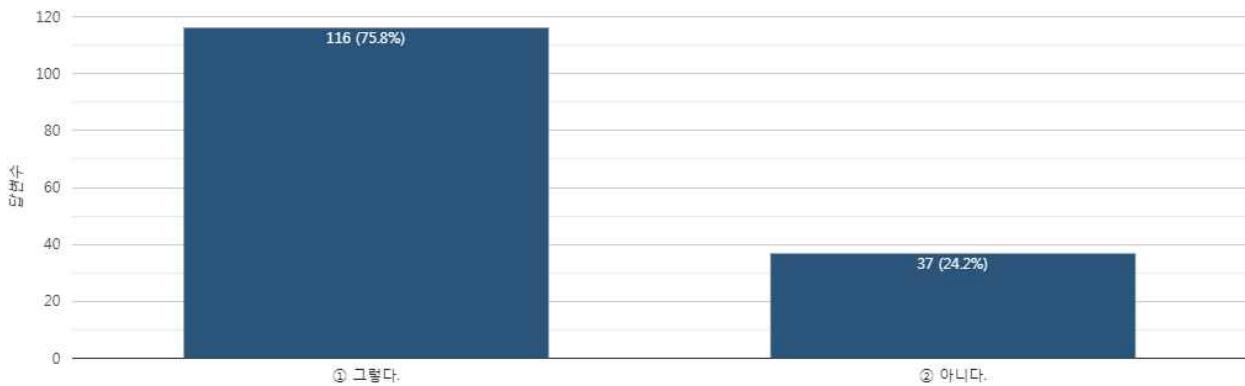
19.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복수 선택 가능).

- 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이 위증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증교사 혐의가 농후한 경우 (110, 71.9%)
- ② 피고인이 신청하여 채택된 감정이 불필요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16, 10.5%)
- ③ 증인 또는 감정인신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하고 증인 또는 감정인은 출석한 경우 (78, 51.0%)
- ④ 유죄판결에 따른 행정처분을 막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소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71, 46.4%)
- 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졌는데 형량을 유리하게 받기 위하여 뒤늦게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14,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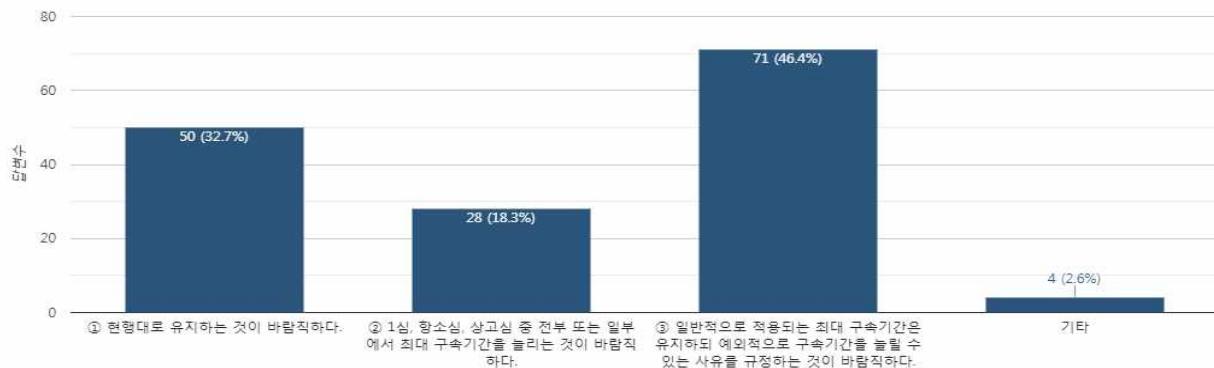
20.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은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적절한 활용을 위하여,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실무편람, 실무제요 등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116, 75.8%)
- ② 아니다. (37, 24.2%)



21. 현행 형사소송법상 간신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구속기간은 1심에서는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각각 8개월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속사건의 충실한 심리를 곤란하게 한다거나, 증인에 대한 위해 우려나 보석조건 위반 등으로 피고인을 위 기간 이상으로 구속할 필요가 있음에도 석방해야 한다거나, 불구속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구속기간 제한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0, 32.7%)
- ② 1심, 항소심, 상고심 중 전부 또는 일부에서 최대 구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28, 18.3%)
- ③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대 구속기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 46.4%)



## ■ 항소법원 설치에 관한 문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항소심을 통합하여 항소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심급구조 개편 논의가 있습니다.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찬성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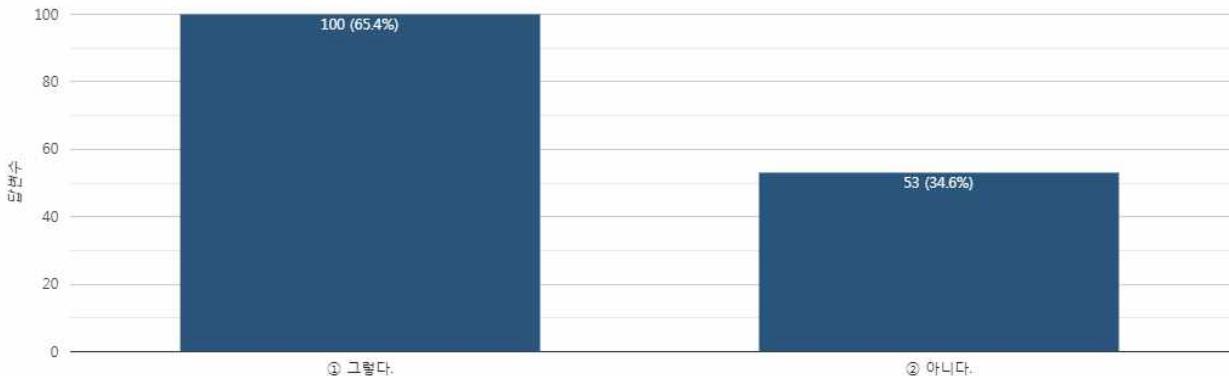
- 1심과 항소심을 분리하여 심급구조의 명확성 확보
- 항소심 법관의 경력 상향으로 재판 충실화 및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 승복률 제고
- 법령해석이나 양형 등을 통일하는 항소심의 기능 강화
- 항소심의 인력 확충, 전문화 등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 <반대론>

- 항소심에의 사법자원 집중으로 인한 1심 약화 우려
- 간이사건 항소심 처리를 위한 과도한 사법자원 투입 우려
- 인원 및 시설 확충에 드는 비용 대비 효용의 불확실성
- 항소심 재판 경험을 갖춘 1심 판사를 확보하기 어려워짐

23. 장기적으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를 통합하여 항소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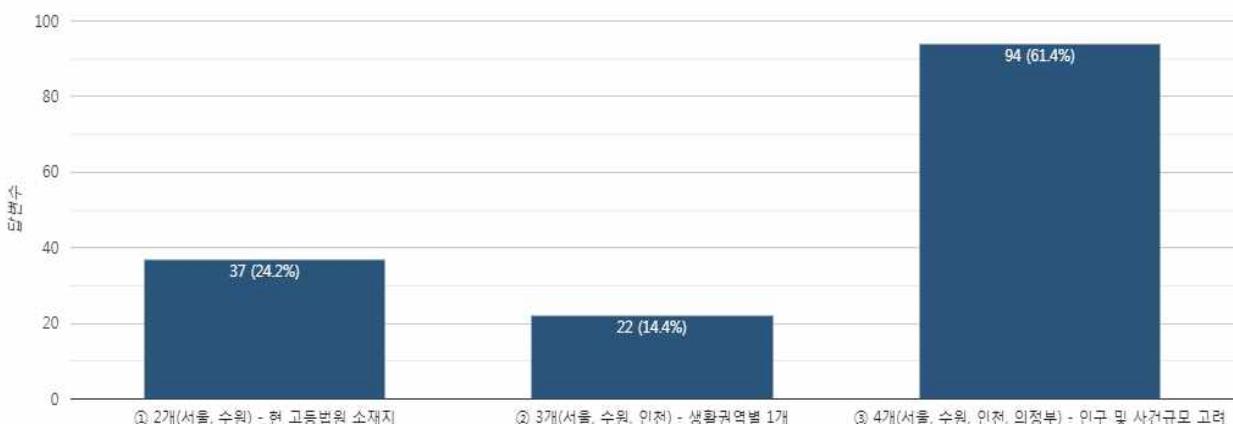
- ① 그렇다. (100, 65.4%)
- ② 아니다. (53, 34.6%)



24. 현재 수도권에는 지방법원 항소부는 8곳(서울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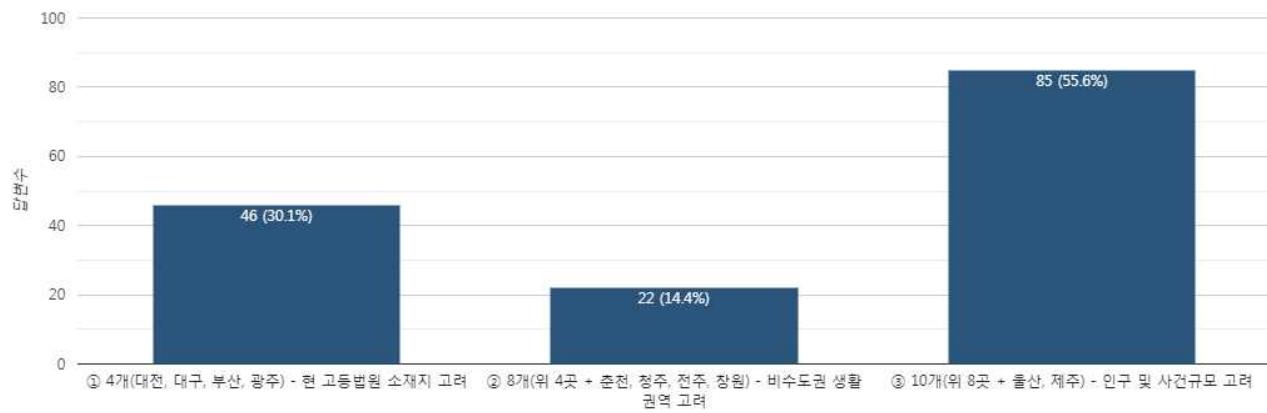
인천, 의정부)에, 고등법원 본원과 원외재판부는 3곳(서울, 수원고등 + 인천원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항소법원(법원장이 있는 조직법상 법원)을 설치한다면 그 개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개(서울, 수원) - 현 고등법원 소재지 (37, 24.2%)
- ② 3개(서울, 수원, 인천) - 생활권역별 1개 (22, 14.4%)
- ③ 4개(서울, 수원, 인천, 의정부) - 인구 및 사건규모 고려 (94, 61.4%)



25. 현재 비수도권에는 지방법원 항소부는 11곳(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울산, 광주, 전주, 제주지방 + 강릉지원)에, 고등법원 본원과 원외재판부는 10곳(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등 +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울산, 제주 원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항소법원(법원장이 있는 조직법상 법원)을 설치한다면 그 개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4개(대전, 대구, 부산, 광주) - 현 고등법원 소재지 고려 (46, 30.1%)
- ② 8개(위 4곳 + 춘천, 청주, 전주, 창원) - 비수도권 생활권역 고려 (22, 14.4%)
- ③ 10개(위 8곳 + 울산, 제주) - 인구 및 사건규모 고려 (85, 55.6%)



26. 항소법원을 설치하더라도 간이사건(민사 소액사건, 형사 고정사건 등)에 대하여는 효율적 사건처리 및 항소법원의 사건부담 과중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110, 71.9%)
- ② 아니다. (43, 28.1%)

